

대한관세법인

NEWS LETTER

2018.May





관세청, 5 월 가정의 달 불법 수입물품 특별단속

관세청은 5 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관세청은 선물용품으로 수요가 많은 수입물품의 불법 반입 및 유통을 막기 위해 오는 6 월 1 일까지 6 주간 불법·부정 수입물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품목은 유모차·분유 등 유아용품, 완구류·문구류 등 어린이용품, 건강기능 식품·의약품 등 효도용품, 기타 선물용품, 가전제품, 식품류 등 15 개 품목이다.

관세청은 이들 품목을 대상으로 품명을 위장해 밀수입하거나 규격 등을 속여 부정수입하는 행위,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행위, 저가 수입물품을 국산으로 둔갑하는 원산지 세탁 행위, 유명 캐릭터 등을 위조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유해 수입 식품·의약품을 불법 수입·유통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관세청은 안전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물품, 검사·검역 받지 않은 불량식품,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급물품 등 국민 안전 침해물품의 반입과 유통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화물반입, 수입통관 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과정을 추적 조사할 방침이다.



1000 달러 이하 해외 직구,

‘반품 관세환급’ 쉬워진다

앞으로 1000 달러 이하 물건을 해외 직접구매(직구)로 샀다가 반품할 경우 이미 낸 관세를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해외 직구로 산 물건을 반품하려면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한 뒤 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했다.

관세청은 5 월 10 일부터 1000 달러 이하 개인 물품은 수출신고를 하지 않아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해외 직구로 산 물건의 85%가 1000 달러 이하라는 점을 고려했다.

현재 관세 환급을 받으려면 반품할 물건을 국제우편으로 배송하기 전에 반드시 세관장을 먼저 찾아야 한다. 이런 절차 때문에 몇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많이 소모하게 된다는 해외 직구족의 불만이 컸다.

앞으로는 수출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운송 확인 서류, 반품 서류, 환불 영수증 등이 있으면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은 전국에 있는 세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세관 e 메일, 팩스 등을 통해 환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내면 된다. 1000 달러 초과 물건의 관세 환급은 기존처럼 세관장에게 직접 신고해야 한다.



해외직구 되팔면 관세법 위반 처벌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관세없이 구입한 해외직구 물품을 되파는 사람들이 늘어나 관세 당국이 사전 계도에 나섰다. '밀수'에 해당한다는 게 관세 당국의 설명이다.

서울세관은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 카페에 해외직구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1297 명에게 게시글 자진 삭제 안내 등 계도 목적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세관은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해외직구 물품·면세품 되팔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판매 등 총 3783 건의 게시글을 모니터링해 관련 글을 작성한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해외 직구 규모는 2 조원을 넘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정주부와 학생, 직장인 등 일반인들이 해외직구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200 달러, 그 외 지역에서 150 달러 미만의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직구할 경우 정식수입통관을 거치지 않아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목적이 자가사용으로 한정돼 있어 이를 되팔 경우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등에 해당한다.** 혐의 사항이 확인되면 세관 통고 처분을 받거나 검찰에 고발돼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밀수입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 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야할 수 있다. 관련 물품은 몰수되고, 물품이 없다면 추징금을 추가로 물어야 한다.

서울세관은 상당수 사람이 '해외 직구 되팔이'가 불법인지 모른채 용돈 벌이로 나섰다가 적발돼 처벌받고 있다"며 "온라인 우범 정보 점검과 행정지도(계도)를 통한 범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아두면 유익한 해외직구 상식

Q 해외 직구하려면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필요한가요?

A. 직구물품의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개인 확인을 위한 고유부호이며,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 (<https://p.customs.go.kr>)에서 성명, 핸드폰 번호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Q. 물품가격이 15 만원 이하이면 세금이 면제되나요?

A. 15 만원이 아니라 '미화 150 불' 이하면 세금이 면제됩니다.

Q. 의류를 200 불 이하로 구매하면 관세가 면제되나요?

A. 의류를 구매하는 경우 미화 150 불 이하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단, 한미 FTA 협정에 따라 미국에서 구매하는 경우에는 200 불까지 면세됩니다.

Q. 미국에서 의류와 식품을 190 불에 구매하였는데 왜 세금이 부과되나요?

A. 미국에서 구매하더라도 물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의류, 전자제품, 신발, 가방, 완구는 200 불까지 면세가 적용되지만 같이 구매한 물품 중에 건강기능식품, 식품, 의약품 등 주로 국민 건강과 관련된 물품을 같이 구매하면 미국에서 구매하더라도 150 불까지 면세됩니다.

Q. 직구 물품을 150 불 이상 구매했는데 왜 전부 과세하나요?

A. 여행자 휴대품은 600 불 초과 금액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지만 직구 물품은 150 불을 초과하는 경우 150 불을 포함한 물품가격 전체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 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Q. 물품가격은 140 불, 현지 세금 14 불 주고 구매했는데 왜 관세가 부과되나요?

A. 물품가격은 물품대금 140 불과 현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 14 불을 합하여 150 불을 초과하므로 관세가 부과됩니다.

Q. 해외 직구 물품을 반품하면 납부한 관세는 환급이 되나요?

A. 해외 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개인이 직접 하거나, 전자상거래 업체 및 관세사무소를 통해 수출 신고를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직구 물품으로 면세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해도 되나요?

A. 자가 사용, 즉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 받았기 때문에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 269 조 밀수입죄, 제 270 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Q. 건강기능식품은 몇 병까지 식약처의 확인 없이 통관이 가능한가요?

A. 건강기능식품은 6 병 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가 질병 치료용으로 구매한 건강기능식품은 6 병을 초과하더라도 의사 소견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Q. 건강기능식품 금지성분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식약처에서 관세청에 금지성분 함유 등을 이유로 수입 금지를 요청하면 그에 따라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지정한 금지성분은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의 위해예방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식약처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Q. 비비탄 총을 구매했는데 허가 대상인가요?

A.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포 및 모의 총포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청 허가 대상입니다. 총포, 도검에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물품의 경우 경찰청에 문의 후 구매하세요.

Q. 전자제품은 왜 1 대만 통관이 가능하죠?

A.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본인이 사용하는 물품 1 대만 별도 승인 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http://crossborder.kca.go.kr>) → 해외직구 및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국민관심서비스 → 해외직구 FAQ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시스템,

한·아세안 FTA 까지 확대 추진

한·중 FTA 에서 성공적으로 시행 중인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시스템을 한·아세안 FTA 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한·아세안 국가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신속통관 등 상호 지원과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위험관리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협조체제가 구축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지난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제 14 차 한·아세안 관세청장 회의'에서 FTA 이행 활성화 및 무역원활화 방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교역안전과 무역원활화를 위해 세관당국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데 이어,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 △전자상거래 협력 △세관간 능력배양확대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한·중 FTA 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 시스템을 소개하고 아세안과도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을 통해 한·아세안 FTA 활용을 극대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양측간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신속통관 등 상호 지원과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위험관리 파트너십 구축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아세안은 2017 년 무역규모가 약 1 천 500 억달러에 달하는 우리나라 제 2 위 교역 상대이자 성장잠재력이 높은 파트너로서,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교역량이 2 배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교역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시스템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시스템”이란 원칙적으로 FTA 세율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세관에 제출하여야 적용이 가능하나, 양 당사국에서 발행된 원산지증명서가 발행즉시 각 양국의 세관시스템에 전달되어 원본 없이도 발급유무가 확인되어 FTA 세율을 적용가능한 제도이다.

나날이 발전하는 물류흐름에 따라 물건은 이미 수입국에 도착하였으나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발급 지연 등의 사유로 수입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FTA 적용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았다.

원산지증명서 제출 생략에 따른 아세안 국가내 물류비용이 감소될 전망이고 그간 항공화물 등 운송기간이 짧은 화물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도착할 때까지 1~2 일 기다린 후 수입신고를 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창고료 등 물류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5 단계
원산지증명정보 송부	원산지증명정보⇔ 수출신고내역 대사	원산지증명정보 수입국 세관 전송	원산지증명정보⇔ 특혜관세 신청내역 대사	특혜관세 적용내역 수출국 세관 피드백
발급기관 ⇒수출국 세관	수출국 세관	수출국 세관 ⇒수입국 세관	수입국 세관	수입국 세관 ⇒수출국 세관



남북관계 훈풍으로

잊혀졌던 도라산·고성세관센터 '주목'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해빙 분위기로 접어든 가운데, 남북 교역의 최첨단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관세청 '도라산세관비즈니스센터(이하 도라산센터)'와 '고성세관비즈니스센터(이하 고성센터)'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두 센터에 대한 통관시스템 점검 및 강화는 물론, 이에 필요한 인력 보강과 조직개편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관세청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민통선 내에 위치하고 있는 파주세관 산하 도라산센터와 속초세관 산하 고성센터는 현재 각각 2 명의 최소인원만 배치되어 있다.

한창 잘 나가던 시절(?) 12 명이 정원이었던 고성센터는 지난 2008 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 통관 물량이 확 줄자 점차 인원이 줄어 현재 2 명까지 인원이 축소됐다.

설립 초기 22 명이 근무했던 도라산센터 역시 지난 2016 년 개성공단 폐쇄 이후 2 명만이 남아 명맥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관 업무가 모두 사라진 지금 두 센터는 장비 관리 및 대외협력에 필요한 업무를 위주로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남북관계 진전으로 인해 두 센터도 곧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7 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담긴 자료를 전달했다.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비핵화였지만, 경제협력도 함께 추진된 셈이다.

실제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 일 입주기업 업종별 대표 15 명으로 구성된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를 위한 TF 를 발족했다.

조사 결과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 124 곳 중 응답한 101 곳의 96%가 재입주 의향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20 년 동안 중단된 금강산 관광도 대북 사업에 막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현대그룹 주도로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현대그룹은 남북 경제협력 분위기에 발맞춰 그룹 내 '남북경협사업 TF'를 본격 가동하고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았다.

남북 통관의 중심에 선 관세청도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모습이다.

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관세청 '남북교역활성화대비종합대책수립 TF'(팀장 : 이종욱 통관기획과장)'는 고성센터에 이어, 도라산센터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통관에 필요한 장비와 시스템을 점검했다.

급변하고 있는 남북관계처럼 언제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사전에 철저히 하겠다는 관세청의 의도로 풀이된다.



원산지 사후검증 위기를 기회로

한국보다 FTA 경험이 많은 미국에서도 원산지 규정 위반 사례가 존재한다. 지난 2001년 미국 굴지의 자동차 회사인 포드는 해외 협력업체의 원산지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4천 200만 달러를 추징당한 사례가 있다.

문제는 FTA 원산지 사후검증 대비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스스로 모든 것을 관리하기가 어렵다. 회사의 재고관리시스템과 FTA와의 연계, 각각의 FTA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 여부, 자료의 보관 등을 자력으로 원활히 해나가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TA를 완벽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사후검증 능력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해 '원산지 관리 시스템'(FTA-PASS)을 보급하는 한편, 전문 컨설턴트들을 통해 FTA 관련 지식과 업무 방안을 전파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제도에 참여하면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FTA 원산지 관리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

다음의 사례를 살펴보자.

▶ 독일세관 "1개월 내 원산지 사후검증 자료 제출하라"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에 소재한 O사는 1998년 설립돼 2011년 무역의 날에 '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전문 수출상사다. O사는 자동차 공조(A/C System) 분야 부품 제조설비(기계), 테스트 장비 및 부품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 수출대상 국가는 인도, 중국, 유럽 등이며, 사업 초기부터 FTA 업무 능력을 배양해 고객사가 요청하는 경우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FTA 원산지증명서도 발급하고 있다.

그동안 별 문제없이 수출을 진행하고 있던 O사가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것은 지난해 4월이었다. 2013년에 수출했다던 품목에 대해 독일세관의 의뢰를 받은 국내 세관으로부터 '역내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원산지 검증을 요청받았다. 한-EU FTA 사후검증을 받게 된 것이다.

한-EU FTA는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출국 관세당국에게 해당 수입건에 대한 원산지 진위여부를 위탁해 수출국 세관이 주체가 돼 검증을 수행하는 '간접검증' 방식을 택하고 있다.(수입국 세관 참관 가능) 따라서 직접검증으로 규정돼 있는 협정보다 검증 당국과의 의사소통 등에 좀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또한 검증 요청을 받은 수출국 관세당국은 원산지 검증 결과를 수입국 관세당국에 통보해야 하며, 수출국 관세당국이 10개월 내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수입국 관세당국은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그런데 독일세관이 정한 사후검증 대응자료 제출 시한은 불과 1개월이었다. 전체 직원 수가 8명에 불과한 회사로서는 사후검증 자료를 작성해본 경험도 전혀 없거니와 사내 업무를 보면서 사후검증 대응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낼 수도 없어 자체적인 사후검증 대응이 거의 불가능했다.

외부 자문모색 및 정부지원 사업유무 등을 확인했고 O사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FTA 활용 컨설팅 사업을 알게 되었고 이 사업을 통해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 컨설팅을 신청,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제조원가 공개 놓고 제조업체와 이견

독일세관이 원산지 검증을 요청한 품목은 대형 설비였다. 금액만 해도 약 90만 달러에 달하는 고가 설비로 제조에만 약 1년이 소요된 대형 프로젝트였다. 수출 품목의 HS 코드는 8479.89였다. 이 품목은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품목에 포함돼 있으며 이를 적용하면 일반 관세율 1.7%가 0%가 된다. 바이어는 FTA 관세율을 적용받아 약 2만 달러의 수입관세를 절감할 수 있었는데 이 점이 O사에 발주한 배경 중 하나이기도 했다.

이 제품이 '역내산'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하려면 설비를 최종 제작한 기업과 제품에 부분품 및 원재료를 공급한 협력업체들 모두로부터 원산지 증빙 서류를 전달받아야 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제조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이를 두고 제조업체와 오랜 시간 협의해야만 했다. 사후검증 대상 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은 부가가치기준 가운데 하나인 'MC 50'이었다. MC 법(iMport Contents Method)은 역외 부가가치가 일정수준 이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상품가격에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역내가치로 보는 방식을 말한다. 즉, MC 50은 상품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원산지 재료비 비중이 50% 이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MC 50은 제조원가를 공개하지 않으면 원산지 판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제조업체는 자사 재료비를 공개하는 것은 "제조사의 영업마진을 공개하는 것"이라며 거부했다.

제조업체를 직접 찾아가 사안의 중대성을 설명하고, 이번 대응을 제대로 못해 '역내산'이 아니라는 결과 판정이 나올 경우 거래 관계가 끊길 수도 있다는 점과 제조원가는 검증 대응 이외에는 절대 기밀로 할 것임을 설득한 끝에 제조원가 명세를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덕분에 원산지 판정 근거자료의 핵심인 자재명세서(BOM, Bill of Material)을 작성할 수 있게 됐다.

▶ 전문가 지원으로 자재 원산지 증빙서류 작성

한 고비를 넘기고 나니 또 다른 고비에 부딪혔다. BOM을 작성해보니, 리스트에 적힌 자재의 수가 약 2천여 개로, 종이로 출력한 분량도 40여장에 달했다. 2천여 개의 자재 하나마다 원산지(포괄)확인서와 거래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야 한다는 것인데, 전문가의 지원을 통해 제조업체와 자재 및 부분품을 공급한 협력업체들로부터 원활하게 서류를 받을 수 있다고 해도 이를 1개월 내에 완성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세관 담당자에게 솔직히 설명하고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 1개월의 연장을 승인받았다. 조건은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본 서류를 1 개월 내에 제출하고 BOM 및 증빙서류는 연장 받은 1 개월 내에 제출한다는 것이었다.

1 개월의 시간을 더 벌었지만 그래도 빠듯했다. 다행히 제품을 공급한 제조업체는 수출을 직접 진행한 경험이 있으며, FTA 대응 차원에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인증 받아 자체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었다. 다만, 제조업체도 중소기업인지라 FTA 원산지 업무 담당자가 공장 업무와 사무실 업무를 병행하기 때문에 업무 시간에 사후검증만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그러자 담당자는 3 주일여 동안 야근과 주말 출근을 자청해 O 사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작성해 발급했다. 담당자의 배려 덕분에 협력사의 원산지 확인서 2 천여 개에 달하는 자재의 거래명세표를 모두 전달 받을 수 있었다.

취합한 서류들을 정리한 뒤 사후검증 대응자료 작성에 들어갔다. 이 일은 기존 FTA 관련 업무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일이었다. 당장 어떤 자료를 비중 있게 정리해야 할지조차도 가늠할 수 없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하고 FTA 전문 관세사에게 지원을 요청했다.

관세사의 조언에 따라 자료를 작성하는 틈틈이 회의를 통해 O사와 제조업체가 작성한 자료를 재검토 했다. 사후검증 대응자료 작성 시 가장 고민했던 부문은 O사가 수출한 설비제품을 처음 접해본 관세 행정관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간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역내산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관세 행정관이 편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여기에 궁금한 사항은 바로 관세사에게 질문해 해결했다. 괜찮겠지 하고 무시했다가 검토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실수 하나 남지 않도록 치밀하게 진행했다. 작성 작업을 마친 뒤에도 관세사와 전체 자료를 다시 검토했다.

이렇게 해서 O사는 세관과의 약속을 지켜 2 회에 걸쳐 세관에 사후검증 증빙자료를 제출했다. 그럼에도 불안감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 심사과정 중 세관 담당자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이기까지 했다. 세관 담당자가 친절하게 상황을 설명해주고, O사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줬지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너무나 느리게 지나갔다.

▶ 관세청 '한국산 기준' 충족 결정

기다렸던 관세청의 '결과 통지'가 사무실로 배달됐다. 잔뜩 긴장한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결과를 지켜봤다. 서류에는 "1.검증대상 물품은 원산지 결정기준(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며, 2.검증대상 원산지 신고서는 유효하며 적정하게 발급됐다"고 기재돼 있었다. '역내산' 판정을 받은 것이다. O사와 제조업체, 협력업체들은 물론 업무를 지원해준 중소기업진흥공단 FTA 전문가와 관세사 등도 지난 수개월여 동안 한 마음이 돼 고생한 보답을 받았다며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다.

앞선 사례에서 살펴보다시피,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다고 해서 수출업체가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금전적인 혜택은 없다. 본사와 해외지사 간 거래 방식인 '기업내 무역'을 제외하면 FTA 원산지증명서는 이를 적용해 절감한 수입관세 혜택은 수입자에게 돌아간다. 이 때문에 간혹 일부 수출업체들이 FTA 를 외면하려고 한다. 하지만 수입자에게 돌아가는 관세절감액은 수출품목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FTA 미 체결국 기업과의 거래에서는 관세절감 혜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수입자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수출업체로부터 구매를 늘리게 돼 수출업체는 매출 상승의 효과를 얻게 된다.

만일 관세청의 심사결과 '역내산'이 아니라는 결과판정이 나왔으면, 수입자는 수입통관 때 적용했던 FTA 관세율이 아닌 일반 관세율을 적용받게 돼 2만 달러의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했다. 또한 가격 메리트가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향후 O사와 거래관계를 지속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사후검증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한 덕분에 O사는 최악의 상황까지 몰릴 우려를 말끔히 씻게 됐을 뿐만 아니라 수입업체들로부터 믿을 수 있는 기업이라는 긍정적 이미지까지 얻게 돼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거래 유지 및 신규시장 진출 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지원 : 한국무역협회 FTA 종합지원센터>

FTA 원산지 사후검증

FTA 원산지 사후검증이란 수출국에서 발급된 FTA 원산지증명서가 형식적요건 및 실질적요건에 맞게 발행되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 ①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요건(원산지 증명서 자체의 중요성 및 기재 내용의 정확성)
- ② 원산지 결정 기준(일반기준 및 품목별 기준)에 관한 요건

원산지 사후검증의 방법은 직접검증(미주형)과 간접검증(유럽형)으로 구분되며 직접검증은 해당 수입국 세관이 해외수출자를 대상으로 직접 검증진행을 하는 것이며 간접검증은 수입국 세관이 수출국 세관에 요청하여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검증방식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협정	간접검증	직접검증	회신		협정근거
			회신기한*	회신주체	
칠레		서면질의 및 정보요청, 방문조사	(서면요청시)30 일	수출자, 생산자	제 5.8 조
싱가포르		정보요청, 방문조사	(서면요청시)30 일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제 5.7 조
EFTA	수출당사국 관세당국에 요청 (수입당사국 관세당국의 참관 가능)		15 개월	관세당국	부속서 1 제 24 조
ASEAN	수출당사국 발급기관에 요청	(예외적으로) 방문조사	(간접)2 개월	(한)세관, (아)발급기관	부속서 3 의 부록 1 제 14 조~제 16 조
인도	수출당사국 발급기관에 요청	(예외적으로) 서면질의 및 정보요청, 방문조사	(간접)3 개월	(한)세관, (인)발급기관	제 4.11 조~ 제 4.13 조
EU	수출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요청 (수입당사국 관세당국의 공동조사 가능)		10 개월	관세당국	의정서 제 27 조
페루	수출당사국 관세당국에 요청	서면질의 및 정보요청, 방문조사	(간접)150 일 (직접)90 일	(간접)수출국세관 (직접)수출자 등	제 4.8 조

협정	간접검증	직접검증	회신		협정근거
			회신기한*	회신주체	
미국	수출당사국 관세당국에 요청 (섬유 또는 의류에 한함)	서면질의 및 정보요청, 방문조사		(간접)관세당국, (직접)수출자 등	제 4.3 조(섬유류), 제 6.18 조
터키	수출당사국 관세당국에 요청 (수입당사국 관세당국의 공동조사 가능)		10 개월	관세당국	의정서 제 25 조
호주	증명서 발급기관에 요청, 수출당사국 관세당국에 요청	정보요청, 방문조사	30 일	(간접)발급기관, (직접) 수출자 등	제 3.23 조, 제 3.24 조
캐나다		서면질의 및 방문조사		수출자, 생산자	제 4.6 조
중국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요청	(예외적으로) 방문조사	(간접)6 개월	(간접)관세당국	제 3.23 조
뉴질랜드		정보요청, 방문조사	(서면요청시)90 일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제 3.24 조
베트남	수출당사국 발급당국에 요청	(예외적으로) 방문조사	6 개월	(한)관세당국, (베)발급기관	제 3.21 조
콜롬비아	수출당사국 관세당국에 요청	정보요청, 방문조사	(간접)150 일 (서면요청시)30 일	(간접)관세당국 (직접)수출자 등	제 3.25 조

Plus. 전문가가 말하는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전략 4 계명!!

1. 사후 검증에 대한 지나친 우려를 없애라.

- FTA 사후검증은 FTA 특혜관세 적용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일뿐 범죄에 대한 수사나 조사가 아니므로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

2. 거래 상대 수입업체와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의사소통하라.

- 미 세관당국의 사후검증은 미국측 수입자를 중심으로 진행되므로 수입업자와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때에 제공하여야 한다.

3. 검증 대응자료는 이미 기업 내부에 있다. 이를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뿐이다.

- 세관당국이 요청하는 상당수의 자료들이 이름이나 형태를 달리할 뿐 실제로는 이미 사내에 구비되어 있다. 검증 대응은 사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세관 당국이 요청하는 형태로 가공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4. 세관 당국에 제출하는 소명자료의 설득력을 높여라.

- 수입세관의 직접검증이나 우리 세관의 간접검증은 소명자료를 가능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하는 과정이다.

결국 세관당국의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뒷받침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검증의 지름길이다.



한국산 철강제품 수출 쿼터제 시행

미국에 한국산 철강을 수출하려는 업체는 5월 14일부터 한국철강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제한 대상품목에 대(對)미국 철강제품을 추가하는 내용의 수출입공고 개정안을 지난 8일 고시했다.

이번 수출입공고 개정은 지난 1일 미국이 발표한 한국산 철강재 쿼터 배정에 따른 것이다. 미국은 한국산 철강재에 무역확장법 232 조에 따른 추가관세 25%를 면제하는 대신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70%를 수출 쿼터(수출 물량 할당제)로 제한했다.

수출입공고는 수입제한품목에 대한 승인과 신고절차 등을 규정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철과 비합금강 등이 포함돼 총 173 개다.**

이 같은 쿼터 수출물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산업부는 수출승인 권한을 철강협회에 위탁했다. **미국으로 철강을 수출하려는 업체는 철강협회에 수출물량 승인을 요청하고, 협회는 올해 수출 가능한 쿼터물량을 고려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때까지 업체별 쿼터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철강협회는 각 업체의 최근 3개년 평균 수출물량의 70%를 기준으로 수출승인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후 업체별 쿼터가 확정되고 일부 업체가 쿼터를 넘어선 물량을 수출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업체는 내년 쿼터를 줄이는 식으로 조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미 양국이 쿼터제 기준일을 올해 1월 1일로 합의하면서 이미 쿼터를 모두 소진한 파일용 강관, 방향성 전기강판 등 9개 품목은 올해 더 이상의 수출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업체별 쿼터 배분도 조만간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배분 기준은 전체 쿼터 기준인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70%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대미 한국산 철강제품 수출 쿼터제 시행에 따른 관세청 업무처리 지침 안내>

■ 수출입 공고 개정 주요내용

- (개정사유) 한-미 철강 쿼터 합의에 따른 대미 수출의 원활한 관리
- (개정내용) 철강제품을 대미 수출제한품목으로 지정하고 한국철강협회의 수출 승인을 받아야 수출 가능 (HSK 6 단위 기준 173 개 품목)
- (시행일) '18.5.14 (월)

■ 대미 수출제한 철강제품 수출통관 처리 지침

- (대상품목) 수출입공고【별표 2】수출제한 철강제품 (HSK6 단위기준 173 개)
- (신고방법) 수출신고 란사항에 철강협회 수출승인서 승인번호를 기재하고 첨부서류로 철강협회 출승인서를 전자제출
- (신고처리) 100% 서류 심사
- (심사내용) 수출신고 란사항의 철강협회 수출승인서 승인번호와 첨부서류인 철강협회 수출승인서의 승인번호 일치 여부 확인
- (시행일) '18.5.14 (월)

※ 수출통관시스템 개선전까지는 '신고인기재란'에 수출승인서 승인번호 기재 (전산시스템 개선 완료시 별도 통보)